

금오공과대학교

kit+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참여기업용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도서관 210호

취업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54-478-7892, 7891)

(FAX. 054-478-7989)

1. 현장실습 신청방법 (1)

kit+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로그인

※ 모든 업무 진행은 온라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kit+ 산업체 현장실습관리시...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변 여비정산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메일 KORUS KAISER LINC관리자모드 LINC 홈 kit+ UMS 방문지도UMS 원스톱서비스

kit+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KIT Industry Placement Management System

MEMBER LOGIN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패스워드 **사업자등록번호** **LOGIN**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Notice 알려드립니다

- 본 사이트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업체를 위한 기관용 사이트입니다.
- 기업에게는 창의적 인재를 선택할 기회 제공! 학생에게는 현장실습 체험과 취업기회를!
- 본교의 kit+ 산업체 현장실습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COPYRIGHT BY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it 국립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 홈페이지 주소 : <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
 - ▶ 기존 참여업체의 경우 : ID와 PW 입력 후 로그인
 - ▶ 신규업체의 경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시 ID와 PW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일)
- ※ 패스워드 분실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54-478-7892)

[illegible]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제출

(1/2)

(실습기관 작성용)

금오공과대학교 현장실습기관 참여 신청서

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기관명.상호				FAX	
	기업구분(✓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설립년도	
	주 소 (구체적으로 기입요망)				종업원수	명
	홈페이지				매출액	억원
	홍보자료(필수)	업체 홍보자료를 intern@kumoh.ac.kr 로 제출 ※ 파일명 : 실습기관명				
	업종 및 주력사업 주요 개발 생산품 (상세하게 기록요망)				금오공대 가족회사 여부	☐ 유 ☐ 무
실습생 모집내역	과 정(✓표)	☐ 방학중 (4주)	☐ 방학중 심화형(8주)	☐ 학기제/취업연계 (12주)	☐ 학기제/취업연계 (15주)	
	실습시작 희망일자	20 . . 부터	20 . . 부터	20 . . 부터	20 . . 부터	
	필요인원	남:(명) 여:(명) 무관:(명)	남:(명) 여:(명) 무관:(명)	남:(명) 여:(명) 무관:(명)	남:(명) 여:(명) 무관:(명)	
현 장 실 습 장 소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실습생 직무	근무부서			숙.식 제공		
	담당할 업무 (상세하게 기록 요망)			지정한 학생	성명 : 학과 :	
	1일 근무시간	오전 시 ~ 오후 시		8시간/일, 5일/주 근무		
	업무상 필요한 전공 분야 등 요구사항					
실습지원비 지급 요청	월정액 : 월 _____ 만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월정액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기관 멘토 (실습학생의 교육 및 안전 담당자)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전화)	• 직 장 :		• 휴대폰 :		
	이메일주소	<u>반 드 시 작 성 바 랍 니 다.</u>				

(실습기관 작성용)

금오공과대학교 현장실습기관 참여 신청서

실습생 교육계획	주차/월별	주요 실습내용 및 계획
	1주차 (또는 1개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 4주 또는 8주의 경우 주차별로 작성, 12주 또는 15주의 경우 월별로 작성

실습기관 추천교수	소속		성명	
-----------	----	--	----	--

학 교 담당자	담당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최 혜 영
		홈페이지 : http://linc.kumoh.ac.kr	메일 : intern@kumoh.ac.kr	
	연 락 처	전화 : (054) 478-7892	팩스 : (054) 478-7989	

20

실습기관 책임자 직위 : 성명 : (인)

※ kit⁺ 산업체 현장실습관리시스템(<http://kumohweb.kumoh.ac.kr/mybsvr/industry/start.html>)에서 신청서 작성

3. 협약서 업로드 방법


kit+

KIT Industry Research and Management Center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기관정보변경 | 로그인아웃

금오공과대학교(부설연구소임)

정연구 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8-10-05

4

현재 협약서

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신 파일명 : 협약서(샘플).pdf

2

협약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양식(

다운로드

받으신 후 업체 직인을 찍은 후 스캔하여

파일을

3

업로드

해 주세요.

1

MENU

실습생 모집내역 등록

실습생 배경요청

근무상환부 작성

실습기관 평가서 작성

현장실습생 조회/출력

현장실습실시현황 조회

협약서

만족도 및 수요조사

현장실습관리비 지원금신청

1

2

3

4

- ① MENU의 “협약서” 클릭
- ② 다운로드를 받아 직인을 찍은 파일을 스캔 (아래의 예시 참조)
- ③ 업로드를 클릭하여 스캔한 파일 탑재
- ④ 제출상태 확인

[예시]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교육 협약서는 **본 협약의 목적** (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현장실습 참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기간은 현장실습 신청 시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된 기간으로 정하며, 교육 장소는 “실습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대학”은 실습 시 준수사항, 안전교육, 바람직한 교육 태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학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학생”의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③ “대학”이 현장 방문 지도 및 협약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5조(대학의 의무) “대학”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교육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하도록 한다.
 ② 교육 중 “실습기관”의 사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③ 교육 기간 동안 사용하는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④ 교육 중 습득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학생의 보호) ① (“학생”이 여성인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업무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월 1일의 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7조(교육 기준시간) 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4주를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습지침) “실습기관”과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 월정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을 포함한 실습기관 평가서를 교육 종료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제10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성직통계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및 재해보상) ① “대학”은 “학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은 사망, 후유장애 등의 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등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의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경비 지원)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경비는 “실습기관” 및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 협약의 해지) “실습기관”과 “학생”은 교육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5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협약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상호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9월 11일

실습기관·실습기관장 : 관동화학연구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경로 441
 · 대표자(또는 부사장) : 이국호

대 학 · 금 오 공 과 대 학 교 현 장 실 습 자 원 센터 장

